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6회 1차 정례회

검토보고서

2025. 6. 16.(월)

순서	검토안건	제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5. 5. 23.
- 회부일 : 2025. 5. 23. (의안번호 : 25-56)

2. 제안이유

- 보건소 장기 의료업무 공백 방지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'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' 상 직급별 정원 조정

▶ 조정 내용: 6급 이하 $\Delta 1$ \Rightarrow 5급 $+1$ (보건소)

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증감	비고	
총 계		1,457	1,457						
5급		<u>65</u>	39	1	<u>9</u>	16			
6급 이하 계		<u>1,369</u>	<u>1,369</u>						
↓									
5급		<u>66</u>	39	1	<u>10</u>	16	$+1$ (보건소)		
6급 이하 계		<u>1,368</u>	<u>1,368</u>					$\Delta 1$	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 - 입법예고: 2025. 4. 17. ~ 5. 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보건소 장기 의료업무 공백 방지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1 주요 개정내용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'별표3 정원관리기
관별 직급별 정원표' 상 직급별 정원 조정

▶ 조정 내용: 6급 이하 $\Delta 1 \Rightarrow$ 5급 $+1$ (보건소)

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증감	비고
총계		1,457	1,457					
5급		<u>65</u>	39	1	<u>9</u>	16		
6급 이하 계		<u>1,369</u>	<u>1,369</u>					
↓								
5급		<u>66</u>	39	1	<u>10</u>	16	$+1$ (보건소)	
6급 이하 계		<u>1,368</u>	<u>1,368</u>				$\Delta 1$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[별표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[별표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457	1,457				총 계	1,457	1,457			
정무직	1	1				정무직	1	1			
일반직 계	1,446	1,446				일반직 계	1,446	1,446			
3급	1	1				3급	1	1			
4급	10	8	1	1		4급	10	8	1	1	
5급	65	39	1	9	16	5급	66	39	1	10	16
6급 이하 계	1,369	1,369				6급 이하 계	1,368	1,368			
전문경력관 계	1	1				전문경력관 계	1	1			
별정직 계	9	9				별정직 계	9	9			
5급 상당	2	1	1			5급 상당	2	1	1		
6급 상당이하계	7	7				6급 상당이하계	7	7			
연구직 계	1	1				연구직 계	1	1			

6. 종합 검토의견

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보건소 보건진료 6급(임기제) 2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1명은 치과의사로 근무중이며, 기존 직원(의사)은 2025년 1월 1일 자 의원면직하여 현재 1명이 장기공석인 상태로 6급으로 의사를 채용할 경우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율이 높고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, 보건진료 6급 정원을 1명 감하고 보건소에 5급 정원을 1명 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보건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[별표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직급별 \ 기관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457	1,457			
정무직	1	1			
일반직 계	1,446	1,446			
3급	1	1			
4급	10	8	1	1	
5급	66	39	1	10	16
6급 이하 계	1,368	1,368			
전문경력관 계	1	1			
별정직 계	9	9			
5급 상당	2	1	1		
6급 상당 이하 계	7	7			
연구직 계	1	1			

